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25고정1153 가. 공갈
나. 공갈교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이진순(기소), 김현우(공판)

판 결 선 고 2026. 1. 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9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약 150만 원의 채권을 가진 자로서, C이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해버리자, C으로부터 피해자 D(남, 32세)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들어 알



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2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당신이 C과 돈 주고 만나면서 잠자리까지 하고 나에게 증거가 다 있다. C이 두 달 동안 내 카드를 쓴 대금이 358만 7,475원이니 그 돈을 대신 갚아라. 그러면 증거는 모두 지워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보내지 아니할 경우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87,475원을 송금받고, 2023. 2. 20. 같은 계좌로 330,900원을 송금받고, 2023. 2.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278,37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4,278,375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교사

피고인은 2023.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자신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도 피해자에게 C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자'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지를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B은 2023.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실 C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스폰관계임을 알고 있다. C이 사용한 내 카드값 중 150만 원을 대신 갚아라. 대신 갚지 않으면 둘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경 B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2023. 3. 16.경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65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공갈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23.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사실 C이 자신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C과 스폰 관계임을 알고 있다. C이 사용한 내 카드값 중 150만 원을 대신 갚아라. 대신 갚지 않으면 둘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2023. 3. 1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7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7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65만 원을 A에게 다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C-D), 토스뱅크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B-D), 토스뱅크 이체내역

1.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공갈)



1. 카카오톡 대화내역(B-A)

1. 이체내역(D-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갈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다.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피고인 A은 공갈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의 공갈 범행에 따른 피해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 B은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합의하지 않았거나 담당 경찰 부서의 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명환 _____